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내규

2000년 9월 22일 제정
2002년 11월 30일 개정
2004년 5월 22일 개정
2009년 6월 13일 개정
2009년 12월 12일 개정
2011년 3월 26일 개정
2014년 8월 13일 개정
2014년 10월 27일 개정
2017년 5월 17일 개정
2018년 2월 8일 개정
2025년 1월 6일 개정

(2018학년도 대학원 학사제도 변경에 따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행정학과 소속 교수들은 행정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과과정 및 강의

제4조 (교과목 배정과 수강지도)

① 교과목은 개설전공을 고려하여 학생중심으로 설강한다.

② 교과목(강의) 배정에 있어 교수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교수나 전문가에게도 개방한다. 전문가라 함은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말한다. (예,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지닌 중앙정부 과장급이상 공무원 등)

③ 지도교수는 학생이 전공과 부합되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강지도를 한다.

제5조 (학기 당 강좌 수)

학기 당 10개 내외의 교과목 강좌를 개설한다.

제6조 (안식학기)

안식학기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교수들의 강의가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선정은 학생의 전공희망의사를 고려하여 주임교수가 학과교수들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단, 1인의 교수에게 한 학기당 박사과정 학생 2인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다.

제8조 (교수의 정년과 자격상실)

교수는 정년과 동시에 지도교수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 전공자격시험

제9조 (전공자격시험의 활용)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및 학문성취도 제고를 위해 전공자격시험을 적극 활용한다.

제9조의1 (전공자격시험 면제요건)

학생이 전공자격시험 시행 전 월(2월 또는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단독 또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경우 전공자격시험 신청만으로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전공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

전공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대학원학칙 및 동 시행세칙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① 석사는 18학점, 박사는 27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단, 2018년 3월 이전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의 경우 개정 전 내규에 따라 36학점 이상 취득자의 경우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2과목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2018학년도 3월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과목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80점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전공자격시험은 4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2018학년도 3월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과목으로 하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80점 이상 득 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 통합학위과정 전공자격시험은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11조 (전공자격 시험과목의 선택)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모든 시험과목의 출제와 채점은 최근 당해 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학위심사 청구 논문 제출 및 심사

제13조 (박사학위 심사 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 5학기 이상의 학생은 누구나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계획서(Proposal)의 승인 및 면제요건)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학 관련 학술지에 단독 또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2009년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 입학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② 연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에 논문제목, 목차,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이론적 배경, 분석의 틀과 구체적인 연구방법, 예상 결과 및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 심의과정에서 학과교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단독 또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발표만으로 학과교수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학술지 발행일은 1학기 심사자의 경우 3월 말, 2학기 심사자는 9월말까지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5.01.06.> 다만, 본 항은 2009년도 1학기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한다.

④ 연구계획서 심사 통과 후 제3항에서 정한 논문게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발표 및 최종 심사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항은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⑤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단독 또는 행정학과 전임교수와 공동(2인 공저)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계획서 심사를 면제한다.

⑥ 박사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의 승인조건인 학술지 등재와 관련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동지도교수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공동(3인 공저)으로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1편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도 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는 행정학과 전임교수를 칭하며, 전공자격시험과 연구계획서 발표 면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해당된다.) <신설 2017.05.17.>

제15조(연구계획서의 심사)

① 연구계획서를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심사 신청서와 함께 연구계획서를 최소 심사일 10일전에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심사청구 논문들이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학과에 학술논문 별쇄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일 10일전에 주임교수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전체 교수에게 심사일 7일전에 심사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지도교수의 관리 하에 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의 행정학과 전임교수가 참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임교수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계획서는 차기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논문의 예비발표)

①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심사신청 이전에 학과 예비발표를 통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비발표 시 논문의 완성도가 현저히 낮다고 참석교수전원이 판단할 경우, 차기에 수정 발표를 명할 수 있다.

② 예비발표는 제15조의 연구계획서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③ 지도교수는 신청청구 논문들을 학과교수들에게 배포하기 전, 예비발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8월 졸업의 경우에는 같은 해 3월까지, 그리고 2월 졸업의 경우에는 전 년도 9월까지 예비발표를 통과하여야 한다.

⑤ 심사 날짜는 학기 첫 번째 달 마지막에서 두 번째 토요일에 진행한다. (2025학년도 1학기 심사자부터 해당된다.) <신설 2025.01.06.>

⑥ 예비발표 후 참석 교수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한해 합격으로 인정된다. (2025학년도 1학기 심사자부터 해당된다.) <신설 2025.01.06.>

제17조 (논문심사위원 내정)

① 예비발표신청 이후 학생의 지도교수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의 추천은 행정학과 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주제가 특수하여 학과 교수가 지도·심사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타 과 교수도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

①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학과 예비발표에서 합격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과 예비발표는 대학원의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③ 학과 예비발표의 진행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 (최종 논문심사의 진행)

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논문심사의 진행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